#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9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서영교·서삼석·오영환

김민철 • 박성준 • 윤미향

양정숙 • 김경만 • 김영배

박 정 · 박재호 의원

(11위)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대한 납부세액 공 제 제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 산정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간 금액에 차등을 두어 판매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음. 또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명목 매출액 증가로 현행 간이과세 제도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함(안제46조제1항).
- 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61조제1항).
- 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3천만원에 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9조제1항).

#### 법률 제 호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4천80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 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69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 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
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른 세액공제 등) ①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	
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	
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	
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	
제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제금액(연간 <u>500만원</u> 을 한	3 <u>700만원</u>
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	
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	
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금액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1. • 2. (생 략)

# ② ~ ⑥ (생 략)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 가의 합계액이 <u>3천만원</u>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억원
<u>.</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의 면제) ①
<u>4천800만원</u>
<u>_</u>